

圖書館 및 讀書振興法案에 대한 修正案

提出年月日：1994. 2

提出者：文化體育公報委員長

一. 修正理由

圖書館 및 讀書振興法案의 내용중 讀書指導要員, 讀書進興推進委員會 별도구성 등 일부 條項에 대하여 有關단체간의 異見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의견을 충분히 收斂하여 立法에 반영하기 위하여 法律案 중 일부를 修正하고자 함.

二. 修正主要骨子

가.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施設을 갖춘 文庫에 讀書指導要員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(案 第6條第4項).

나. 圖書館 發展과 讀書振興을 상호연계 推進하기 위하여 圖書館發展委員會와 讀書進興推進委員會를 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로 통합·개칭함(案 第10條)

다. 圖書館 및 文庫의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 등을 設立할 수 있도록 함(案 第14條).

라. 公共圖書館이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따라 貸出文庫를 設立할 수 있도록 함(案 第21條第3項).

마. 公立文庫의 경우에는 該當地域에 소재한 公共圖書館의 分館으로서 運營에 대하여 公共圖書館의 指導·支援을 받도록 함(案 第40條第2項).

三.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案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.

第6條第4項중 “司書職員등을 두거나 讀書指導要員을”을 “司書職員등을”로 하고 第5項을 削除한다.

第10條(圖書館發展委員會 및 讀書振興推進委員會)를 第10條(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)로 하고 同條 第1項중 “圖書館發展委員會”를 “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”로, 第2項의 “地方圖書館發展委員會”를 “地方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”로 하며 同條 第3項을 삭제하고, 第4項을 第3項으로 하며 第4項중 “第1項·第2項 및 第3項”을 “第1項 및 第2項”으로 “委員會·地方委員會 및 振興委員會”를 “委員會 및 地方委員會”로 한다.

제14條(協會의 設立등)을 第14條(圖書館協會등의 設立)으로 하고 第1項의 “協會를”을 “圖書館協會등”으로 한다.

第21條第3項중 “分館·移動圖書館을”을 “分館·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”로 한다.

第40條第2項 중 “文庫”를 “公立文庫”로 “公共圖書館”을 “公共圖書館의 分館으로서 公共圖書館”으로 하고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說한다.

③ 私立文庫는 該當地域에 소재한 公共圖書館의 指導·支援을 받아 運營한다.

附則第5條 題目중 “協會”를 “圖書館協會등”으로 한다.

〈修正案 條文 對比表〉

原 案	修 正 案
<p>第6條(司書職員 등) ①~③(생략)</p> <p>④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施設을 갖춘 文庫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<u>司書職員 등을 두거나 讀書指導要員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讀書指導要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社會教育法의 規定에 의한 社會教育 專門要員</u> 2. <u>大學(專門大學을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이상 的 學校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聯學科를 卒業한 者</u> 3. <u>大統領令에서 정하는 教員 또는 教育·文化關聯分野의 公務員으로서 5년 이상의 經歷者</u> 4. <u>高等學校 또는 이와 동등이상 的 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教育訓練施設에서 所定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者</u> 	<p>第6條(司書職員 등) ①~③ (原案과 같음)</p> <p>④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司書職員 등을</u></p> <p>〈삭제〉</p>
<p>第10條(圖書館發展委員會 및 讀書振興推進委員會) ①</p> <p>圖書館의 균형있는 發展과 讀書振興에 관한 다음 的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部에 <u>圖書館發展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1~8(생략)</p> <p>② 地域社會에서의 圖書館의 균형있는 發展과 讀書振興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<u>地方圖書館發展委員會(이하 “地方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③ <u>文化體育部長官은 법국민적인 讀書振興運動을 目的으로 하는 讀書振興推進委員會(이하 “振興委員會”라 한다)를 構成·運營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第1項·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·地方委員會 및 振興委員會의 構成·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u></p>	<p>第10條(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</u></p> <p>.....</p> <p>1~8(생략)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地方圖書館 및 讀書振興委員會</u></p> <p>.....</p> <p>③ 〈삭제〉</p> <p>④第1項 및 第2項의</p> <p><u>委員會 및 地方委員會의 構成·運營</u></p> <p>.....</p>

原 案	修 正 案
<p>第14條(協會의 設立 등) ① 圖書館 및 文庫는 상호간의 資料交換, 業務協力和 運營·管理에 관한 研究, 관련 國際團體와의 相互協力 및 職員의 資質向上과 共同利益의 增進을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(생략)</p>	<p>第14條(圖書館協會 등의 設立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圖書館協會 등을 設立할 수 있다.</p> <p>②~④ (原案과 같음)</p>
<p>第21條(公共圖書館의 設立·育成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任을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分館·移動圖書館을 設立하고 이를 指導·育成하여야 한다.</p>	<p>第21條(公共圖書館의 設立·育成 등)</p> <p>①~② (原案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..... 分館·移動圖書館 또는 대출문고를</p>
<p>第40條(文庫의 運營) ① (생략)</p> <p>② 文庫는 該當 地域에 所在한 公共圖書館의 指導·支援을 받아 運營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第40條(文庫의 運營) ① (原案과 같음)</p> <p>② 公立文庫 公共圖書館의 分館으로서 공공도서관의</p> <p>③ 私立文庫는 該當地域에 소재한 公共圖書館의 指導·支援을 받아 運營한다.</p>
<p>附 則</p>	<p>附 則</p>
<p>第5條(協會에 대한 經過措置)</p> <p>①~② (생략)</p>	<p>第5條(圖書館協會 등에 대한 經過措置)</p> <p>①~② (原案과 같음)</p>